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10. 16 선고 2023가단531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호연

변론 종결2024. 8. 21.

판결 선고2024. 10. 1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2018. 4. 6. 별지 D콘도(D콘도)위탁경영계약을
1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배우자인 E와 공동사업자(지분 50%)로서 'F'이라는 상호로 국내여행업을 영위하며 객실이용권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아산시 G 소재 D콘도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여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E의 C에 대한 채권

1) E[상호: H(I, J, K, F)]는 2015. 7. 15. C와 사이에 D콘도에 관하여 예치금 7억 6,000만 원, 계약기간 2015. 6.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대매사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2) E는 2016. 4. 27. 대전고등법원 2015라388호로 C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판매금지가처분'이라 한다).

가. C는 2016. 12. 31. 또는 E가 2015. 7. 15.자 대매사총판계약에 따라 C에게 지급한 예치금이 모두 소진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1) D콘도 전체 객실에 대한 객실이용권을 소셜커머스, 홈쇼핑, 폐쇄물 등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직접 판매, 위탁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C가 위 가.항 중 1)항을 위반하여 D콘도 객실이용권을 판매한 경우 C는 판매한 객실 당 20만 원을 E에게 지급하라.

3) C는 E를 상대로 대매사총판계약 해지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 2017나16165호로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2. 5. 'C와 E 사이에 2015. 7. 15. 체결된 대매사 총판권 계약이 2018. 1. 8.자로 해지(종료)됨에 따른 C의 E에 대한 예치금 반환 채무는 36,925,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E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자107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2019. 11. 12. 'C는 E에게 2019. 11. 13.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날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C는 E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

다. 피고와 C 사이의 위탁경영계약

피고는 2018. 4. 6. C와 사이에 별지 D콘도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C는 피고에게 D콘도의 위탁 경영을 통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영업 활성화를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경영의 범위]

현재 C의 소유로 운영중인 D콘도 해당 건물의 객실 187 객실 및 객실영업과 직접 관련된 부대시설(세미나실, 강당 등)의 대실, 판매등 영업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탁한다. 또한, D콘도의 모든 소유권 행사 및 처분과 대내외 법적, 행정적 권한과 책임은 D콘도 본래의 소유권자이며 운영 주체인 C에게 있으므로 계속적, 정상적으로 시설물과 영업권을 유지관리하여 피고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 기간]

본 계약은 2018년 4월 6.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며 상호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약사항을 조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위탁의 수행]

2018년 4월 6.일 계약일 기준으로 D콘도에 발생하는 금전적 책임은 C의 귀속으로 하며, 이후의 사항은 피고의 귀속으로 한다.

제5조[보증금]

보증금은 1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C에게 즉시 예치하여야 하지만 피고의 채권 금액에서 상계 처리토록 한다.

제6조[임대료]

피고는 경상이익 발생분에 대하여 3,000,000원 한도에서 월 임대료(VAT포함)로 2018년 6월부터 매월 말일 C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피고는 지점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보수 및 투자로 대체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시설 보수 및 투자]

C와 피고는 상호 협의하여 필요 시 시설보수 및 투자를 시행하되 C는 피고가 집행한 시설보수 및

투자금에 대하여 계약 중도 해지 시 또는 계약 종료 시 감가상각 후 정산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통신, 공조, 상하수도처리, 건물, 배관 등 기본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유지보수가 아닌 신규, 대체, 추가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으로 전입 산정하기로 한다.

제8조[계약의 변경 및 진술과 보장]

가. 상기 협약기간 내에 C의 사유로 운영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운영주체에게 본 협약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새로운 운영주체에 본 협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의 이행을 운영주체 변경 시 기본조건으로 명시하여 의무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나. C는 D콘도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권자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본 협약의 종결일까지 본 협약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승낙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진술 및 보장한다.

라. E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원고는 2021. 3. 3. E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E는 2024. 7. 1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24. 7. 15.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C는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체결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 내지 15, 17 내지 20, 29 내지 35, 50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조합,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에 대한 채권자는 원고와 E가 공동 운영하는 사업체 'F'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E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채권 4,000만 원, 2016. 5. 1.부터 2017. 9. 15.까지 C의 이 사건 판매금지가처분 결정 위반으로 인한 간접강제금 채권 19,968,800,000원이 있다.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가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C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1억 원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채권 1억 원과 상계하기로 하고 임차료도 시설보수 및 투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며,

피고에게 중요재산인 D콘도의 영업권과 영업재산을 1,041,399,632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E가 이 사건 제소전화해 당시 C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원고는 늦어도 2019. 12.경에는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에 관하여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고, ②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 체결일인 2018. 4. 6.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4. 7. 15.에야 E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여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E나 원고가 2019. 12.경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 사실, 나아가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원고가 E와 F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E 명의로 체결한 대매사 총판권 계약이나 이 사건 화해조서, 판매금지가처분의 당사자를 원고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원고는 2021. 3. 3. E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E는 2024. 7. 1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24. 7. 15.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E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인 이 사건 화해조서 및 이 사건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E 사이의 채권양도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E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를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다20332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82 판결 등 참조).

2) 갑 제23, 24,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와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기 전 C에게 다음과 같이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7. 12. 7. C에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M 대표님의 처우 부분에 대한 우리측 마지막 제안

가. 월수익의 20% 지급

나. 월급여 및 차량/법인카드 제공

- 월급여: 기존 제안드린 금액

- 차량: 현재 타고 다니시는 차량 제공

- 법인카드: 월 100만 원

다. 계약금형태의 금원 지급에 대해

- 2017. 4.경 상호 합의하였을 때의 미지급금 내역이 6.5억, 현재 미지급금 내역이 1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7. 12. 1. H과의 계약해지소송이 패소함으로써 앞으로의 온라인 판매 및 객실운용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 매출 및 수익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C 법인의 직접 온라인판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광고비 등의 지출이 증가하는 등 우리가 안고가야 할 채무 및 책임이 더

증가된 상황이므로 계약금 형태의 금원지급은 지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외 미팅 시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및 책임의 증가 등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C의 미지급금 및 운영비에 대한 내용

가. 미지급금 처리

- 각각의 미지급금 중 급히 나가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여 D콘도를 운영함에 있어 문제되지 않게 분납하여 상환할 예정

나. 운영비

- 가장 중요한 현재직원들의 급여 및 D콘도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 등을 우선 처리하여 진행

#자금집행 전 진행해야 할 계약내용

- 첨부된 계약서(총 9종) 작성

- 자금집행이 우선해야할 건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여 진행함

② 피고는 2018. 3. 14. C에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우선 당사가 원하는 판매채널 대행요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판매채널 대행요청 공문내용

- 당사가 운영중인 D콘도의 온라인 판매대행을 요청합니다. 그 대상에 11번가 [이하생략] 등에 대해 판매대행을 요청드립니다.

판매채널 대행에 대하여 3. 30.까지 날인 유보 요청에 대한 답변

- 우선 당사는 현재시점에서 H과의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며, 지금까지의 귀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H과 여러 번의 협상이 있었으나 제대로 된 협상진행 되지 못한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생각합니다.

- 그리고 귀사가 진행한다고 하는 H과의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내용/조건도 당사에 상의한 바 없음에도 무작정 3월말까지 날인 유보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 현재 N과의 소송판결로 18억의 압류가 C의 모든 금융거래, 유체동산압류로 이어진다면 귀사의 운영상황은 보다 더 힘들어 집니다.

이에 당사의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니 올바르게 빠른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③ 피고는 2018. 4. 5. C와 C의 대표이사인 M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당사는 C에 대해 대여금 채권 및 간접강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C는 당사에게 21억 원 채무를 인정하고, 대표이사인 M이 연대보증하여 약속한대로 변제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해주었습니다.

위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르면 수신인들은 2018. 3. 21.까지 당사에 6억 원을 변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계속된 이행촉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당사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신인들이 운영하는 콘도의 수신인들 소유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즉시 아래 계좌로 6억 원을 입금한다면 당사는 강제집행을 실행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수신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와 위와 같은 이메일 및 내용증명을 주고받다가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이 그 자체로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은 C가 피고에게 2년간 D콘도 건물의 객실 및 부대시설의 대실 및 판매 등 영업에 관한 업무 전반을 위탁하고, 피고는 C에게 경상이익 발생분에 대하여 3,000,000원 한도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 체결만으로 C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다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으로 피고가 그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것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않고, 피고가 그 수익으로 사실상 채무를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가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 자체만으로는 다른 채권자로 하여금 장래 수익을 책임재산으로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까지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③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에 따른 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의 C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여 우선변제 받았고, 임대료도 시설보수 및 투자로 대체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C는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 중 보증금을 상계하기로 하거나 임대료를 대체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부분만으로 피고가 C와 통모하여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았다거나 C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원고는 D콘도의 영업의 시가는 연 520,699,816원에 이르는데, C는 피고에게 2년간 1,041,399,632원 상당의 영업권 및 영업재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의 내용을 영업권 및 영업재산의 양도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식회사 O와 C 사이의 위탁경영계약에 비추어 부당하게 적은 금액이라고도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영은

별지